

2023. 4.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7일 오전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02-2133-5410
노동권익팀장	박재형	02-2133-5417
주 무 관	서명진	02-2133-9507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실시·노무사 직접 방문

- 30인 미만·계약금액 소액의 영세·소규모 공사장·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우선 실시
- 노동법 준수실태 점검부터 인사노무관리법, 산업안전까지...사업주·노동자 1대1 면담
- 추가 컨설팅·법률자문·직원교육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연계지원, 철저한 사후관리
- 28일(금)까지 5월 시작하는 상반기 컨설팅 대상업체 25개 선착순 모집

-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직원교육, 법률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까지 해준다.
- 서울시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시(市) 발주 공사장과 용역 및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25개씩 총 50개 대상이다.

- 시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30인 미만·계약금액 소액 영세·소규모 공사장·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우선 실시>

- 특히 올해부터는 컨설팅 대상을 조정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작년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23년부터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소규모·영세사업장은 예산과 인력은 물론 정보 창구도 부족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 현실.

-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도급 및 계약금액이 3~10억원(건설:3억~10억 미만, 일반용역: 5억~10억 미만, 민간위탁: 5억원 미만))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류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사무별 금액에 따른 분류
 - 건설공사 : 도급금액 3억 이상 10억 미만 - 일반용역 : 계약금액 5억 이상 10억 미만
 - 민간위탁 : 사업예산 5억원 미만 사무

-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도 강화한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해준다.

- 시 담당부서에도 기존에는 컨설팅 결과만 통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법 준수실태 점검부터 인사노무관리법, 산업안전까지...사업주노동자 1대1 면담>

- 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 점검을 통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확인하는 것.
- 이어 사업주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관련 기본정보와 인력 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도 진행하는데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고 법률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하며 올 상반기 컨설팅은 5월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市 발주공사 현장, 용역 및 민간위탁업체는 28일(금)까지 발주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westmi90@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컨설팅은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계약금액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개별 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년부터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약 2,200여건의 인사·노무컨설팅을 실시해왔다.
 - 지난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개선했고 추가 컨설팅을 요청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정 의무교육, 취업규칙 제·개정, 법률 자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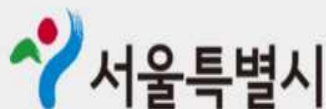
-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23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1부. 끝.

2023년 노동 환경 개선 컨설팅



복잡한 **노동법!** 까다로운 **노무관리!**
서울시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누가 대상 인가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용역업체**,
민간위탁기관 이 대상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또는 신설 사업장 및
최근 2년 이내 컨설팅 이력이 없는 곳을 위주로 선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도급금액 3억 이상 10억 미만 공사현장
- 계약금액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업체
- 사업예산 5억원 미만 민간위탁기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앞장 서겠습니다!



무엇을 컨설팅 하나요?

노동관계법령 준수 실태 점검

- 「근로기준법」 등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안내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임금의 적정 지급, 취업규칙 작성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 ▶ 기타(법정 의무교육 이행 여부,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 (※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적용규정이 상이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안내
- ▶ 안전보건 주지 의무, 안전보건교육 등 이행 여부
 -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 ▶ 기타(장기 건강검진 실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 등)

사업주 및 근로자 개별 면담

- 노무사 면담을 통한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 인사·노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 등 의견청취 및 상담
 - ▶ 기타 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법정 의무교육, 취업규칙 재개정 등)

사전준비 사항 안내

1. 근로자 명부
2. 근로계약서
3. 임금 지급대장
4. 취업규칙
5. 연차휴가 관리대장
6. 퇴직금 지급 관련서류
7. 4대 보험 관련서류
8.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1. 미리 보내드린 '자체점검표'와 '가이드북'을 참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해보세요.
2. 담당 노무사와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일정에 맞춰 위의 8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노무사가 먼저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3. 노무사와의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주세요! (사업주 및 근로자 각 30분 내외 소요)

자주 묻는 질문

☑ 컨설팅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16조, 및 계약체결 시 작성하셨던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컨설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사항 발생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은 사업장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적합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주신다면 아무런 불이익도 드리지 않습니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가 계속 지원해 드립니다.

☑ 컨설팅 종료 후에, 도움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나요?

· 노동상담이 필요할 땐 서울노동권익센터(☎1661-2020)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법정 의무교육 신청, 취업규칙 제·개정 등 노무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133-9507)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